

지난 94건설진흥총진대회에서 우리협회는 단체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 그동안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신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및 고급기술인력양성, 부실공사추방에 앞서가는 등 건설산업진흥을 한층 촉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協會의 組織力과 行政力으로 設備業界 位相 提高

지난 1989년 11월 25일 협회가 창립된 이래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는 협회의 조직력과 행정력을 충동원, 제도적으로 설비업자에게 불리한 건설관계법령제도의 개선, 공사비 적산기준의 개선 등 건설산업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공사발주제도가 개선되어 설비공사를 원도급공사로 수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설비업계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그러면 협회의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핵심사항을 간추려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誌]

[1] 진흥사업 실적

(가) 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내용: 93년 9월 협회에서는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제도화 해 줄 것을 행정쇄신과제로서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93년 9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이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기계설비공사는 시공 및 하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설비업체에 분리발주를 하되 공사 발주자의 판단에 따

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임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행정쇄신위 본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재무부에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공사의 분할발주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93년 12월 30일 공포, 건설부에서는 수차례 걸쳐 관련업계 및 학계, 건설부 기술부서 관계관의 합동토론회를 갖고 심의 끝에 이의 절충안으로 분할계약금지는 기본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된 공사(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고속도로 지하철공사 등에 적용),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비공사 등에 적용) 등 공사의 성질이나 시공여건을 기준으로 발주관서의 장이 판단해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을 재무부에 제시하여 이 안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년 6월 30일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② 효과: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 정밀시공이 요구되며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하자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책임시공이 요구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발주자의 예산절감은 물론 그동안 원도급자의 불리한 저가하도급계약과 공사대금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어 양질의 시공이 기대되며 원·하도급간의 각종 현장부조리 등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설비전문업종의 기술개발과 국제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다.

(나) 하도급대금(선금급 포함)직불제도

① 내용: 협회에서는 새정부의 신경제 발전 100일 추진계획에 「건설하도급부조리의 고질적 병폐 척결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의 직불제도 개선」을 주창하고, 그 개선방안을 93년 3월 8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개선 추진사항」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하는 등 건설부

장관 주제 간담회와 건설관련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② 결과: 93년 5월 20일 정부계약제도 개정시 원도급낙찰률이 예가의 85% 미만인 공사와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3 신설) 이와 함께 93년 6월 26일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시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수급인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했다.(건설업법시행령 제35조 개정) 또 94년 1월 7일 건설업법 개정시 하수급인의 보호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시켰다.(건설업법 제28조 개정)

③ 효과: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보장으로 업계의 이자부담 경감 및 하도급대금자급 과정의 각종 하도급부조리 해소 등이 기대된다.

(다) 부대입찰제 의무화

① 내용: 설비건설업의 수주독립성 확보 및 원·하도급자간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제한적최저가 적용 낙찰금액 상향조정, 덤핑입찰방지, 부대입찰제 도입, 대가지급 지원이자 지급 등을 건의했다.

② 결과: 93년 9월 20일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시 1건 공사금액이 1백억원 이상으로 PQ적용대상공사에 대해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했다.(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2 신설)

(라)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개선

① 내용: 하도급 승인사항 위반시공 및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선금급 또는 기성금 기한내 미지급 등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조치토록 건의했다.

② 결과: 93년 12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급을 지불한 경우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15일)내 지불한지의 여부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3조)

(마) 해외전문건설업 등록제도 마련

① 내용: 전문건설업의 활동 영역을 한정된 국내건설시장에서 전세계로 다변화시키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및 기수자 5인 등 등록기준을 마련, 전문건설업자의 해외진출 문호개방을 건의했다.

② 결과: 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시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93년 12월 31일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해외건설업종에 19개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고 국내면허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자도 해외건설등록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희망할 경우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효과: 전문건설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위상 강화는 물론 해외공사 위장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축적된 전문건설기술 활용이 기대된다.

(바)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면허 중복 취득 제한

① 내용: 전문건설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법인 또는 개인)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② 결과: 94년 1월 7일 건설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면허 취득자로서 겸업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자는 95년 6월 30일까지 법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건설업법 제8조)

(사) 건설기술자 배치 완화

① 내용: 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기능

제 기술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는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② 결과: 94년 1월 7일 건설업법 개정시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완화했다.(건설업법 제33조)

(아) 건설보증제도 개선

① 내용: 건설공체조합 보증내용에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② 결과: 94년 4월 4일 건설공체조합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가 기대된다.

(자) 에너지이용관계 법령제도 개선

(1) 도시가스사용시설 공사확인제도 개선

① 내용: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가스공급사업자가 시공의 적정여부를 확인 검사한후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90년 12월 28일 동자부 입법예고) 현행 시장, 군수의 권한(가스사용시설 개선명령, 불응시 사용중지)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 도입을 폐지하도록 동자부에 건의했다.

② 결과: 91년 3월 15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시 이 제도의 도입이 폐지됨에 따라 가스공급사업자의 부당한 시공관여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확인업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개정

① 내용: 가스보일러는 자연배기식과 강제 배기식의 2종류가 있는데 모든 가스보일러에 배기기사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연배기식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였을 때에만 설치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② 결과: 91년 5월 2일 동자부고시에서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가스시공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① 내용: 기술인력의 확보와 가스기능사의 취업 확대가 용이하도록 가스기능사 2급 이상 자격자 현장배치기준을 완화(1억원→2억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② 결과: 92년 8월 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

(4) 주택난방용 기름 및 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제도 개선

① 내용: 주택난방용 기름 및 연탄보일러를 설치·시공하였을 때에는 열관리시공협회의 확인·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서류상의 확인과 부당수수료 징수 등 각종 부조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주택난방용 기름 및 연탄보일러 설치·시공확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동자부에 건의했다.

② 결과: 91년 12월 1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과 92년 7월 9일 동자부령 제127호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확인수수료 폐지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설치·시공하였을 때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연간 약24억 원의 수수료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2] 설비공사 적산제도의 조사연구 개선 실적

(1) 기계설비부문 단위당가격표 개선 보완

조달청과 협동으로 각 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위당가격표를 표준화하여 전국 공사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배포하여 적정공사비 책정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마련(90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5차 개선)

① 제1차 개선, 보완(90년 1월): 전기아크관용



우리협회는 건설관계법령제도의 개선 등 건설산업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접 등 433개 항목의 표준단위당가격표 완성

② 제2차 개선, 보완(91년 3월): 닥트(각형 및 원형)제작 설치 등 508개 항목의 표준단위당가격표 완성

③ 제3차 개선, 보완(92년 6월): 적산열량계 설치 등 804개 항목의 표준단위당가격표 완성

④ 제4차 개선, 보완(93년 3월): 자동온도조절 밸브 설치 등 875개 항목의 표준단위당가격표 완성

⑤ 제5차 개선, 보완(94년 3월): 동관배관 등 893개 항목의 표준단위당가격표 완성

(2) 정부표준품셈 개정 및 신설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품셈의 신설과 개정이 시급한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실사와 관계자료를 검토, 정부에 건의하여 품셈의 합리화를 추진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총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개정내용]

① 91년도: 닥트제작설치 등 6개 항목

② 92년도: 급수 급탕용 PP-C 배관 등 10개 항목

③ 93년도: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치 정밀 진단 등 25개 항목

④ 94년도: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등 16개 항목

(3) 표준품셈(기계설비 부분)의 체계화

종래 공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255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기계설비품셈을 92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부와 협동작업으로 이를 3편(공통사항,기계설비,프랜트설비)으로 나누고 공종 특성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했다.

[3] 공사시공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실적

(1) 시공기술지도를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설비공사 신기술 및 신공법 소개와 해외설비공사에 관한 자료,관계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월간 설비공사를 지난 90년 5월에 창간해 매월 4000부씩 정부,유관기관,단체,회원사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 건축설비공사(기계부문) 표준시방서 개정·보완

1980년 12월 제정 이후 10년 이상을 개정·보완없이 사용되어 오던 「건축설비공사(기계부문) 표준시방서」를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와 신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기술혁신에 맞추어 급배수,가스,정화조 등 각종 설비공사의 시공,현장관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보완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3) 설비공사 하자사례 및 대책집 발간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고급화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공사비 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구조가 정적이라면 기계설비는 동적으로 설계와 시공질의 평가는 준공후 실제 운전 시에 나타나는 일련의 하자 빈도로 갈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설비기술연구소에서는 설비공사

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공사원가절감 및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공사 시공시 발생되었던 하자사례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수집·분석하여 「기계설비 하자사례 및 대책집」을 발간해 유관기관,건설업체,회원사 등에 배포했다.

[하자사례집 수록 내용]

- ① 위생기구:세면기설치시 마감 부실에 따른 하자 등 12건
- ② 급수·급탕설비:수도계량기동파 등 17건
- ③ 배수,통기,소화설비:PVC입상과 파손 등 11건
- ④ 정화조:철재류 부식 등 3건
- ⑤ 가스설비:가스누설 등 6건
- ⑥ 공기조화용 기기:냉수코일의 동결파손 등 10건
- ⑦ 난방설비:바닥배관 부실시공 등 19건
- ⑧ 배관:고압증기환수계통 등 12건
- ⑨ 덕트설비:주택취출공기의 셀프서킷 등 5건
- ⑩ 환기 및 배연설비:환기구 먼지로 인한 난방불량 등 7건
- ⑪ 자동제어:급수관 진동 등 7건
- ⑫ 소음진동:환기덕트 소음발생 등 15건

(4) 우수설비공사업체 발굴 소개

90년 5월부터 매월 우수설비공사업체를 1~2개 발굴하여 「월간 설비공사」에 우수경영 시공사례를 홍보,회원사의 시공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4] 회원사의 기업혁신 및 시공능력향상을 위한 실적

(1)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적용기법 세미나

91년 2월 21일과 92년 2월 10일 서울 성동구 군자동 소재 청년회의소에서 회원사 중견기술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부 기술관리관실 관계관의 강의로 2회 세미나 개최

(2) 93춘계세미나

93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4회에 걸쳐 93춘계세미나를 개최, 건설관련제도 및 기업 경영 혁신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회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93춘계세미나는 본회 이동락 회장의 「신기술 및 신공법 소개」, 박인구 부회장의 「기업 경영 혁신 및 건설업계의 과제」, 노동부 산업 안전국 건설안전과 김종효 사무관의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비 계상제도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과 조근의 사무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해설 및 불공정거래 대응책」 재무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훈기 사무관의 「예산회계법령상 전문건설업체에 적용되는 사항 해설」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회원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이동락 회장은 용접부위를 최소화하고 나사로 접합시키는 Flange Grooving 방법과 관내에 에어가 차서 난방불량 등 많은 하자 발생의 요인이었던 에어를 자동적으로 제거해주는 기기인 Spirovent를 소개해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3) 93동계세미나

91년 11월 23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및 중견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이동락 회장이 「신기술 및 신공법」 소개를, 한영환 중앙대학교 교수가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의식과 행동혁신」을, 노동부 훈련지도과 서석주 사무관이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및 건설산업 안전재해예방」에 대해서 강연을 해 회원사들이 국제경쟁력에 대비하도록 의식을 고취시켰다.

(4) 현장 견학

회원사 대표 및 중견기술자 등은 93년 4월 20일부터 94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공장제작화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대일공무(주) 안성공장을 방문해 ①CAD,CAM을 이용한



이동락 회장이 김우식 건설부장관에게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창작하는 공법인 라이저 유니트 공법을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화된 에어డ크트시스템 제작 공법 ② 배관시스템의 현장 조립 시공 ③ FLANGE GROOVING, BENDING, SWEEPOTET 공법 등을 견학하고 본회 이동락 회장으로부터 공장제작 및 신공법 바탕으로 국제개방대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 우수자재 상설전시관 개설

국내 건설 기자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외 설비배관재를 수집하여 협회에 소규모 상설전시장을 개설했다.

94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설비자재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전시 샘플의 협조를 받아 배관자재 및 판이음쇠 등 30여 업체의 6백여점 제품이 전시되었다.

상설전시장은 협회 4층에 마련되었으며 발주자와 설계사무소 및 설비업체 종사자들에게 개방·견학시킴으로서 설비자재 품질향상 및 시공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 증진 실적

(가) 국내유관단체와의 협력 증진

(1) 기계설비협의회 구성

지난 86년 8월 16일 공기조화냉동공학회

등 4개의 설비공사관계단체와 기계설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기계설비협의회 구성단체

① 공기조화냉동공학회: 공기조화냉동공학 및 위생공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71년 9월 11일에 창립되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2천2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냉동공조기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75년 2월 18일에 창립되어 냉동공조기기 제작업체 90여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냉동공조기술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67년 10월 23일에 창립되어 냉동공조기술분야 인사 1천5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기계설비기술 용역에 관한 상호기술교류 및 세미나를 목적으로 84년 1월 10일 창립되어 기계설비엔지니어링업체 70여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외유관단체와의 협력 증진 실적

한일·협력회의

일본의 일본공조위생공업협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기술정보 교류

① 제1차 한·일 협력회의: 90년 9월 14일 일본 동경 기계진흥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이동락 회장 및 간부회원사 등과 일본냉동공조설비공업연합회 전무이사 및 설비업체 대표들과 협력체계를 맺었다.

② 제2차 한·일 협력회의: 91년 4월 26일 일본 동경 공조위생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이동락 회장을 비롯한 김효경 고문, 설비기술연구소 김성찬 소장, 회원사 대표 등과 일본의 냉동공조위생공업협회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③ 제3차 한·일 협력회의: 91년 8월 23일 대한설비공사협회 회의실에서 본회 이동락 회장을 비롯 김효경 고문, 설비기술연구소 김



일본의 일본공조위생공업협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기술정보 교류

성찬 소장, 대표 회원사 등과 일본측의 설비공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 제3차 회의 이후부터 회의를 생략한 가운데 상호 정례적으로 기술정보자료를 교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6] 회원사의 권익옹호와 사회봉사활동 실적

(가) 회원사의 권리옹호

(1) 회원사의 하도급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므로서 회원사의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도별 처리실적]

연도별	처리 건수	조정 금액
1990	6건	63,574천원
1991	19건	399,170천원
1992	13건	468,267천원
1993	13건	214,410천원
계	51건	1,145,421천원

(2) 회원사의 하도급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93년 6월 4일부터 본회 및 시·도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3년도 처리건 수는 13건으로 조정금액은 214,410천원이다.

(나) 협회 예산 20% 이상 절감(회비부담 경감)

[예산절감 실적] (단위:천원)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절 감 액		
			의 년 도	재 산 조 정	적립금충당
1989	388,682	210,892 (54.2%)	177,790	-	
1990	877,185	577,218 (63.5%)	169,967	150,000	
1991	1,141,537	670,713 (58.7%)	155,824	315,000	
1992	2,896,818	2,105,589 (72.6%)	508,063	283,166	
1993	1,191,311	963,254 (80.8%)	160,053	68,004	
계	6,495,533	4,507,666 (69.3%)	1,171,697 (18.0%)	816,170 (12.5%)	

(다) 사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및 수재의연금 등 기탁]

연 도	건 수	금 액
계	27건	33,557천원

(1) '90 건설진흥축진대회

1990년 6월 18일 「'90 건설진흥축진대회」에서 우리협회 홍평우 부회장(우진설비(주))이 정부포상을, 정용택 이사(극동가스산업(주))와 정두상 부산시 부회장(우정설비(주))가 건설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 '92 건설진흥축진대회

1992년 6월 18일 「'92 건설진흥축진대회」에서 신기술·신공법 개발 등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건설인 25명에 대한 훈·포장과 38명에 대한 건설부장관 표창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설비공사업계로는 이동락 회장의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표창 2명, 건설부장관 표창 4명, 협회단체표

창으로는 이재희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① 은탑산업훈장 : 대한설비공사협회 회장 이기도한 이동락 대일공무(주) 대표이사는 20여간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면서 조립식온돌페널, 스텁방열판, 융착법등 신자재 10여건의 실용신안 등록과 에어덕트 시스템 및 배관연결 기계제작 공법 개발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 앞장선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② 국무총리표창

상 호	대 표 이 사
(주) 유성종합설비 금강설비기공(주)	제종모 김정남

③ 건설부장관 표창

상 호	대 표 이 사
(주) 우주설비	이상문
(주) 동산종합설비	박종학
(주) 대동기업	윤학중
(주) 동양엔지니어링	유재남

④ 협회단체 포상자(대통령 표창) 대한설비공사 협회 이재희 상임이사

(3) '94 건설진흥축진대회

①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 대한설비공사협회는 단체로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 그동안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신기술 개발과 품질혁신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부실공사추방에 앞장서는 등 건설산업진흥을 한층 촉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② 대통령 표창 : 종인설비(주) 이유종 대표이사

③ 건설부장관 표창

상 호	대 표 이 사
(주) 영일	김근희
(주) 성도건설	계성익
(주) 동오	장동원